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7
----------	-----

제출년월일 : 1994.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 안 이 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양곡가공업을 희망하는 도민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 ①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②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③ 등 업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

## 불 임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별첨
- 관 계 법 령..... 별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조..... 별첨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중 농산과 소관 제13호 다음에 제14호 내지 제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농산과	14	양곡가공업시설의 등록	양곡관리법 제19조
	15	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임대·변경신고,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동법시행령 기준
	16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의정지 등록의 취소	양곡관리법 제21조 제1항
	17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자 등에 대한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양곡관리법 제36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